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부정판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 및 의무위반의 경중에 비추어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고려되어 과태료를 형벌로 수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함(안 제 41조 및 부칙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에 위반한 자

제42조 본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안 제4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 5. (생략)	제41조(벌칙)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 ----- ----- ----- -----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u>제41조 제 1 호 · 제 5 호</u>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42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1. <u>제4조의2제2항에 위반한 자</u>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2조(양벌규정) -- ----- ----- ----- ----- ----- ----- ----- <u>제41조 제2호 · 제6호</u> ---- ----- -----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u> (생략) <u>1의2.</u> (생략) <u>2. ~ 4.</u>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u>2.</u> (현행 제1호와 같음) <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4. ~ 6.</u>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	제43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u><삭 제></u> <u>2.</u> (개정안과 같음) <u>3.</u> (개정안과 같음) <u>4. ~ 6.</u>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략)	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부칙 -----<u>1</u> <u>년</u>-----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52
----------	-------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이병훈 · 김영배 · 김철민
박 정 · 신동근 · 어기구
오영훈 · 유정주 · 이상현
이용우 · 전재수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개정안은 부정판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 및 의무위반의 경중에 비추어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고려되어 과태료를 형벌로 수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함(안 제41조 및 부칙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방지 노력”을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에 위반한 자

제42조 본문 중 “제41조제1호·제5호”를 “제41조제2호·제6호”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생략)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 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제5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 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자	7. ----- -----제41조제2호·제6호 ----- ----- -----

② (생 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5. (생 략)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1호·제5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 ----- ----- -----. 1. 제4조의2제2항에 위반한 자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2조(양벌규정) ----- ----- ----- -----제41조제2호 · 제6호----- ----- ----- -----. ----- -----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u> (생략) <u>1의2.</u> (생략) <u>2.</u> ~ <u>4.</u> (생략) ③ ~ ⑤ (생략)	<u>2.</u> (현행 제1호와 같음) <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4.</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